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5352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5352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4774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영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정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변론 종결 2019. 9. 19

판결선 고 2019. 10. 3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4774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2014. 9. 29. 접수 제312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8. 10. 변제를원인으로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2.경부터 2017. 9.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2,98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 2013. 12. 24.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97,5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3,000,000, 채무 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3. 12.경 부터 2018. 8. 1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62,800,000원보다 많은 97,5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sup>1)</sup>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C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대여금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판 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 측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3내지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C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7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C 이 피고로부터 계좌를 통해 차용한 돈은 대부분 3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임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 또는 C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300만 원에서 2, 000만 원 사이의 큰 금액으로 피고가 계좌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큰 금액의 대여금만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현금으로 수십 만 원씩 15회에 정도 대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그

현금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C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각 작성일자 사이에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시로 차용금을 변제하면서도 그 직후 곧바로 피고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차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⑥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나 C의 주장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액, 그 작성일자(5장의 차용금증서가 해당 월의 말일에 작성되었다) 등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C과 피고 사이의 기존 차용금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 또는 ○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별도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석 판사 정선균 판사 박소정

별지

1) 피고는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